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60126

www.bairua.com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6-01-27

twjungcp@naver.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6-01-27

[베이루아]

## 정 보 공 개 서

[베이루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베이루아]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87, 1층 104호(상동,에이플러스)  
032-710-4417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신설)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베이루아	베이루아 BAiRUA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87,1층 104호(상동,에이플러스)			
	법인 설립등기일 <sup>①</sup>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22.09.01	정태욱외1명	032-710-4417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808-13-01820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sup>①</sup>	영업표지	주 소		
대표	정태욱	베이루아 BAiRUA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87,1층 104호		
			대표자 <sup>②</sup>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정태욱, 오다형	032-710-4417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공동대표	오다형	베이루아 BAiRUA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87,1층 104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정태욱, 오다형	032-710-4417	-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베이루아]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sup>①</sup>	베이루아	"Bake"빵과 "Raw"生이라는 뜻을 합친 단어로 기본에 충실하여 맛의 품미와 식감을 살리고 건강한 빵을 만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상 호 <sup>②</sup>	베이루아 OO점	
상표(서비스표) <sup>③</sup>	 베이루아	출원번호: 4020240180505 4020240180506

## 5. 최근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	-	-	80,394	-	-
2023년	-	-	-	266,912	-	-
2024년	111,185	59,555	51,629	313,212	42,305	46,284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으며, 2024년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중에 베이루아의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정태욱	대표	2022.09.~현재	베이루아 대표 (베이커리카페)	총괄
	오다형	공동대표	2022.09.~현재	베이루아 대표 (베이커리카페)	관리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sup>①</sup>
	상근	비상근	
2024 12월 31일	2	0	0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베이루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상표권)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베이루아	가맹점 운영	출원일자: 2024.10.01	출원번호: 4020240180505 4020240180506	정태욱	현재 출원 단계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상표 등은 현재 출원 중인 상태로,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할 권리는 아직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II. 가맹본부의 [베이루아]사업 현황

### 1. [베이루아]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가맹사업 예정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24년 10월 01일)

현재까지 가맹계약 체결 사실은 없습니다.

### 2. [베이루아]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공동 대표)	가맹본부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베이루아	베이루아	정태욱, 오다형	가맹사업 예정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87, 104호

### 3. [베이루아]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베이루아	제과제빵, 커피, 음료	빵,커피 등

###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베이루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0	0	0	0	0	0	1	0	1
서울	0	0	0	0	0	0	0	0	0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0	0	0	0	0	0	1	0	1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베이루아] 가맹점 수

가맹점이 없어 해당없음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6. [베이루아]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베이루아]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sup>①</sup>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지역	2024년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 (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sup>2</sup> 당	상한	면적 3.3m <sup>2</sup> 당	하한	면적 3.3m <sup>2</sup> 당	
전체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서울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부산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대구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인천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광주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대전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울산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세종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경기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강원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충북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충남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전북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전남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경북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경남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제주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가맹점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 8. [베이루아]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가맹점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음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당사에서 [2024년]에 [베이루아]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sup>①</sup>	수단 <sup>②</sup>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판촉		(비공개)	45			(비공개)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지점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호평종합금융 센터	경기 남양주시 늘을1로16번길 29 늘봄타워 2층	031-570-3869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가맹본부와 계약한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창구에서 예치신청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뱅킹에 의한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하여 당 가맹본부 상호를 찾아 예치금액을 입력하여 예치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음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베이루아]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아래의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초도 상품비용, 기타 기본공사 외 추가비용, 간판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예치대상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가입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교육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개점행사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2) 보증금

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 또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3,000	계약 체결과 동시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의 미수금, 기타 홍보비 등의 미수금 및 손해배상금을 제외하고 반환	1. 계약종료 시 잔존채무액을 공제 후 상호, 서비스포 등 당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표지의 철거가 완료된 후 정산을 원칙으로 함 2. 별도의 이자가 없음

3) 예치 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귀하 또는 가맹점 양수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최초 가맹비	0
최초 교육비	0
계약 이행보증금(부가세 없음)	3,000
합계	3,000

귀하는 계약 체결 시에 가맹금을 일시에 전부를 납부하여야 하며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46.2m <sup>2</sup> 당(14평))	면적 3.3m <sup>2</sup>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04,374	7,457			
간판	협력업체	3,600		계약금: 계약 시	설치 전 계약취소	간판1개소 기준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46,200	3,300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외장,철거, 전기증설, 1 차설비, 냉난방 등
주방/설비	협력업체	45,000			설치 전 계약취소	가맹점 매장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초도물품 (최초상품비)	가맹본부	2,000			잔금: 점포오픈 전	배송 전 계약취소
	협력업체	2,700		배송 전 계약취소		
	협력업체	220		배송 전 계약취소		
	협력업체	1,400		배송 전 계약취소		
	협력업체	24		배송 전 계약취소		
	협력업체	600		배송 전 계약취소		
	협력업체	2,400		배송 전 계약취소		
	협력업체	230		배송 전 계약취소		

- ※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의 명성과 통일성은 물론 업체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시공업체를 선정해야하며, 이때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실측 및 설계도면 제공비와 공사감리비를[3.3㎡당금액 22만원(부가세포함)]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동안 가맹점 운영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실측 및 분사,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지불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초도물품(최초상품비용)은 가맹점 오픈 시 발주 상품에 대한 비용으로 가맹점 상황과 예측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1) 가맹희망자의 책임으로 가맹점의 점포입지를 선정한다. (2) 가맹본부는 유동인구, 교통량, 입지의 특성, 시장의 특성, 구매습관, 근린시설, 업종별특성 등의 상황에 따른 점포선정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다.

당사는 귀하가 점포를 선정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치장소, 통행인의 수, 지역의 특징,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귀하에게 조언할 뿐이며, 이는 해당입지의 법적, 구조적 가능성여부 및 매출과 수익 등 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의 책임과 결정으로 신중하게 점포의 설치장소를 결정해야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최초 개설교육 및 필요시 서비스 보수교육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거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를 종사시켜서는 안됨
종업원	필요시 입문 및 서비스 보수 교육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귀하의 가맹금 납부 절차

귀하는 계약 체결 시에 가맹금을 일시에 전부를 납부하여야 하며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sup>①</sup>	지급대상 <sup>②</sup>	금액 <sup>③</sup>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sup>④</sup>
로열티	가맹본부	가맹점 월 매출총액의 5%(부가세 별도)	매월 10일	월단위 입금으로 반환 없음	영업표지,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사용 대가, 경영지원 등의 대가로서 소멸성임	가맹사업을 위한 필요 또는 운영방침과 각 가맹점의 영업방식 및 혜택부여 등에 따라 로열티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광고,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부담액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별도공지)	광고, 판촉 실시 전	광고,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 안됨	가맹사업을 위한 필요 또는 운영방침과 각 가맹점의 영업방식 등에 따라 분담금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는 광고비의 일부를 가맹점 지원비로 부담할 수 있음
점포 환경개선비용	협력업체	본사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리모델링 공사 실시 이전 별도공지	리모델링 실시 전	제작 또는 공사 완료 후 반환안됨	
POS 사용료	협력업체	월 33	업체 기준에 따름	시스템 관리비로 반환되지 않음	시스템 관리비로 반환되지 않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액의 연 12%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후불로 반환없음		

가맹점 월 매출총액은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단순 현금매출액(현금영수증 처리된 금액을 뺀 금액임)만을 제외한 금액으로 카드 매출액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처리된 현금 매출액(지역화폐 및 상품권 포함)과 각종페이 등 간편 결제 및 전자결제, 배달 매출액 등을 모두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당사의 광고분담금은 일정비율로 청구하고 있으며, 광고분담 기준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 및 사업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광고내용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부담
브랜드 및 상품광고	30%	70%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해당사항 없음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회계 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필요시	
QSC 관리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 상태를 조사	필요시	
재고 관리	가맹점사업자의 실제 재고 수량 조사	필요시	

#### 4) 가맹점사업자의 독립적 지위에 따른 책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동반자이자 협력자이며, 가맹본부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 판, 기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지원 및 통제를 받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외관상 가맹본부와 동일한 사업주체로서 인식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자기의 명의로와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법률상 독립된 사업주체이기도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법적, 세무적으로 독립된 사업체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가맹점 영업의 결과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따라서, 위임과 대리, 사용자와 피용자, 동업자 관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 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관계에서 문제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하기 위해 별도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하며, 물품 공급에 따른 미납 및 연체가 발생할 경우 발주 차단, 물품 공급 중단, 계약의 갱신 거절 및 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 (가맹본부)와 계약관계가 유지됩니다. 다만,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당사의 전적인 귀책사유에 의한 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비용으로 간판, 점포 내·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포스터 등 영업표지와 관련된 시설을 교체하며 이외 가맹 본부의 책임과 비용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에 다른 요인이 결합되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부분 만큼 책임이 경감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베이루아]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귀하가 당사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구분	금액
최초 가맹비	0
최초 교육비	0
계약 이행보증금	3,000
합계	3,000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미불금을 즉시 지불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베이루아]의 시스템, 식단, 조리법, 운영방법, 노하우 등 모든 지적재산권과 상호·간판, 휘장, 로고 등 [베이루아]의 영업표지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점포에 표시된 영업표지 일체를 철거하고 점포를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후에는 가맹점이 [베이루아] 가맹점임을 직·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나) 위 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본 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가 제공한 매뉴얼, 양식, 운영파일 등 점포 운영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하며, 어떠한 사본이나 기록도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분실 등의 사유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가 정한 소정의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계약이행보증금은 가맹점사업자가 미수금을 납입하고, 상호, 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완료하여야 반환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 [별첨 2] 참고

귀하가 별첨 2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원·부재료 대금을 연체하거나 본 계약의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 시정 요구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원·부재료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해당 사항 없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베이루아]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베이루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2) 당사가 [베이루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과 용역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운영방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고,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메뉴를 무단 삭제하여서도 안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sup>②</sup>	위반시 책임 <sup>③</sup>	비고 <sup>④</sup>
생식빵 Full Size	왼쪽에 명시된 제품 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왼쪽에 명시된 제품의 판매를 임의로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생식빵 Half Size			
딸기버터 수제잼			
딸기장미 수제잼			
블루베리버터 수제잼			
키위버터 수제잼			
트리플베리버터 수제잼			
갈릭버터 러스트			
아메리카노(1샷)			
아메리카노(2샷)			
카페라떼			
바닐라라떼			
헤이즐넛라떼			
자몽에이드			
레몬에이드			
청포도에이드			
유자에이드			
레몬티(아이스)			
복숭아티(아이스)			
유자차			
레몬차			
자몽차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또는 운영방침 및 매뉴얼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또는 제품	거래상대방 별로 기재된 상품·용역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타 가맹점사업자				
만 19세미만 청소년(미성년자)	주류	주류 판매금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생식빵 Full Size	11,000	모든 매장 가격 동일 사전 통보	2025년 7월 기준
생식빵 Half Size	6,000		
딸기버터 수제잼	8,000		
딸기장미 수제잼	8,000		
블루베리버터 수제잼	8,000		
키위버터 수제잼	8,000		
트리플베리버터 수제잼	9,000		
갈릭버터 러스크	4,000		
아메리카노(1샷)	2,000		
아메리카노(2샷)	2,500		
카페라떼	3,000		
바닐라라떼	3,500		
헤이즐넛라떼	3,500		
자몽에이드	3,500		
레몬에이드	3,500		
청포도에이드	3,500		
유자에이드	3,500		
레몬티(아이스)	3,000		
복숭아티	3,000		
유자차	3,000		
레몬차	3,000		
자몽차	3,0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가격은 물가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양당사자가 합의한 가맹계약서 상 영업지역확인서의 내용과 표시에 의하며, 가맹점으로부터 반경 300m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양당사자의 합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지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이 절대적 또는 배타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다른 브랜드인 경우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 간 영업지역이 중복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sup>①</sup>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sup>②</sup>	
	가맹본부	계열회사
당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과,커피,잼 등을 판매하는 전문점	베이루아	해당 없음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sup>①</sup>	설정방법 <sup>②</sup>
계약매장에서 반경 300m를 원칙으로 함. 단, 영업지역 내 특수상권(백화점, 대형쇼핑몰, 대형마트, 시장, 호텔, 리조트, 공항, 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지하 상가, 대형병원, 관공서, 대학교 등)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영업지역이며, 특수상권의 영업지역은 특수상권 내로 한정됨	영업지역확인서 상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에 영업지역을 표시함(단, 경계선을 불포함하며 표시 안쪽 지역임). 지도별첨이 없을 경우 가맹계약서 상의 영업지역 설정기준에 따름. 또한, 특수상권은 영업지역확인서 상 지도에 표시되지 않아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지역에서 제외된 별도 지역임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베이루아’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대리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특수상권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되며, 가맹본부는 특수상권에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본부는 특수상권에 가맹점을 개설하는 경우 필요에 의해 해당 지역 가맹점사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직영점을 개설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해당지역 가맹점사업자의 요청과 합의에 의해 일정기간 운영 후 직영점을 해당지역 가맹점사업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sup>①</sup>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sup>②</sup>
2024	0	10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sup>①</sup>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sup>②</sup>
2024	0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베이루아]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이후 자동갱신 또는 재계약 될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계약의 갱신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대한 상품대금, 대여금 및 기타 비용 등 모든 금전적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여야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계약 갱신 시점에 새로운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①+ 15일 이내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 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1항 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 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1항 2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40조 1항 3호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40조 1항 4호
○ [페이루아]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 은 경우	제40조 1항 5호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 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40조 1항 6호

### 4) 원·부재료 등 공급의 중단 사유

원·부재료 등 공급의 중단 사유	관련 계약조문
<b>제31조 (원·부재료 등 공급의 중단)</b>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전에 해당사 유 및 재공급 요건을 적시한 서면으로 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원· 부재료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위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사유를 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맹점사업자가 연체한 원·부재료 대금이 계약이행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li> <li>2. 가맹점사업자가 3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li> <li>3.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 통지를 거부하거나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li> <li>4.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1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li> <li>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3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li> <li>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li> <li>7.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li> <li>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li> <li>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품 이외의 상품을 임의로 판매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li> </ol> <p>②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원·부재료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li> <li>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li> <li>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li> <li>4.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에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li> <li>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li> <li>6.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li> <li>7.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li> </ol> <p>③ 제2항의 경우 가맹본부는 원·부재료 등의 공급중단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재공급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제31조
---------------------------------------------------------------------------------------------------------------------------------------------------------------------------------------------------------------------------------------------------------------------------------------------------------------------------------------------------------------------------------------------------------------------------------------------------------------------------------------------------------------------------------------------------------------------------------------------------------------------------------------------------------------------------------------------------------------------------------------------------------------------------------------------------------------------------------------------------------------------------------------------------------------------------------------------------------------------------------------------------------------------------------------------------------------------------------------------------------------------------------------------------------------------------------------------------------------------------------------	------

5)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서 제41조 (계약의 해지) 제1항] 에 의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에서 정한 물품공급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41조 2항 1호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41조 2항 2호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1조 2항 3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41조 2항 4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 2항 5호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 2항 6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41조 2항 7호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41조 2항 8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41조 2항

## 6)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귀하와 상호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변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며, 서면 합의(계약서 작성 등)를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변경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가 없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일 45일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당사의 승인이 없었던 경우 당해 계약은 당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는 양수희망자가 신용도 등의 문제로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또는 양수희망자가 영업을 양수할 경우 계약이행이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양도 요청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영업양도에 대하여 승인을 거절을 할 경우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영업양도신청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양도인 또는 양수희망자는 거절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신청한 경우 신청자는 거절사유에 대하여 소명 및

검증함으로써 이를 다룰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시 가맹점 영업설비, 시설물, 집기 등의 감가상각분과 향후 이에 대한 보충 및 필요비용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도금액이 양도인의 초기투자비용을 상회하는 등 양수인에게 현저히 불공정하고,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낮을 것이 명백하여 오히려 양수인에게 신규 개설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맹본부는 양도양수에 대하여 승인을 취소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의 가맹계약은 종료되고,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가맹점의 양도양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책임과 결정에 의한 결과이며, 양도양수에 대한 당사의 승인이 양수 가맹점의 매출과 수익 등 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이 가맹점을 양수하면서 신규가맹계약을 원할 경우 신규가맹계약으로 체결하고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합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sup>①</sup>	가능 여부(조건) <sup>②</sup>	이전 범위 <sup>③</sup>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상속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업무위탁	불가능	-		

기타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서면에 의한 승인이 없는 한, 해당 가맹계약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전·대차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중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가맹계약 종료 후 2년 내에 대한민국 전지역 내에서 귀하가 [베이루아]브랜드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베이루아와 동종 또는 동일시 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전문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외에도 가맹계약서 제41조 제4항에 따른 위약벌이 부담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베이루아]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상권에 따라 협의	월 24일 이상 개장하여야 하고, 연속하여 3일 이상 임의로 휴업할 수 없습니다. 점포를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일 전부터 매장입구에 게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일정기간 휴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을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가맹본부에 통지하시고, 휴업일로부터 3일전에 이를 게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와 관련하여 점포의 면적과 유동 인구 및 방문고객의 수에 비례하여 주방과 홀의 적정 운용인력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점포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귀하는 가맹점 점포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점포의 위생 및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과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sup>①</sup>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가맹본부	
서비스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수시	가맹본부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가맹본부	
회계 감사	담당자 매장 방문 → 회계장부나 POS검사 → 감사표 작성 → 가맹점 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가맹본부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사전에 제공하거나 구두 제공합니다. 그 밖에 귀하에게 영업장 관리·감독에 관한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품질관리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영업장 관리소홀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원·부재료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광고 또는 가맹점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본부가 30%, 가맹점사업자가 70%를 분담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의 종료 후 당사와 귀하가 합의한 영업비밀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금 삼천만(₩30,000,000원)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하며,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영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관련 계약조문)

#### 제43조 (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

- ④ 가맹점사업자가 동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의 종료 후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금 삼천만(₩30,000,000원)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하며,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46조 (손해배상)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이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

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비고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sup>①</sup>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sup>②</sup>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sup>③</sup>	지급절차 <sup>④</sup>	비용부담 제외사유 <sup>⑤</sup>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판교체 비용</li> <li>○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li> <li>○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li> <li>○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li> </ul>	

			<p>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부담액 을 지급 &lt;분할지급 시 절차&gt; ○가맹점사업자 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 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 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30%, 2 차 : 1차 지 급 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 의 40%)</p>		
<p>○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 화가 객관적 으로 인정되 는 경우 ○위생이나 안 전의 결함으 로 인하여 가 맹사업의 통 일성을 유지 하기 어렵거 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 한 지장을 주 는 경우</p>	<p>○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 공 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 한 실내건축 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 맹사업의 통 일성과 무관 하게 가맹점 사업자가 추 가 공사를 실 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 용은 제외) ○집기·장비교 체비용</p>	<p>○가맹점사업자 의 투자금액 (임차료 등), 월평균 매출 액 등을 고려 하여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50%~10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50 ~80% -단, 집기·장비 교체비용은 20% 부담</p>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sup>①</sup>	절 차 <sup>②</sup>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 ]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신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음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소양 서비스 마인드 기술적 지식 배양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개업하기 이전까지 이수하여야 함	필수
운영 교육	서비스 제고 매출증대 방법	실습교육 집단 강의	교육실시 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필수
특별 교육	신제품 교육 영업방침 행정조치에 따른 소집교육	실습교육 집단 강의	교육실시 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필수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베이루아]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없습니다.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해당 사항 없음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sup>①</sup> 운영 현황 (신설)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베이루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87, 104호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sup>②</sup>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0년 3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24년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해당없음

[별첨 1] 재무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